

[붙임1]

## 2025. 1. 14. 실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연말연시 각종 행사 개최 관련 「위탁선거법」 등 안내

### 할 수 있는 사례

- 대한체육회 및 각 회원종목단체가 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사람 포함. 이하 같음)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말연시 행사 등에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. 이하 같음)가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 및 축사 등을 하는 행위
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- 선거운동기간(2024. 12. 26. ~ 2025. 1. 13.) 전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
  - ⇒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
-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(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한함)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
  - ⇒ 명함배부 금지장소 :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안 및 대한체육회의 사무실 안

지도과 / kite15153

### 할 수 없는 사례

- 행사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
  -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기간(2024. 7. 31.~ 2025. 1. 14.) 중에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)에게 후보자가 음식물 또는 답례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 - 선거운동기간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
  -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※ 본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위탁선거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상 제한·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.